

##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

신 청 인(채무자)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권자)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당사자간의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기○○○ 재산명시사건에 관하여, 채무자는 귀원이 20○○. ○. ○. 명한 재산명시명령에 불복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

(채무자가 명시명령을 받은 날 : 20○○. ○. ○.)

## 신 청 취 지

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기○○○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## 신 청 원 인

- 1. 채권자(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함)의 대여금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20○○. ○. ○. 채무자(이하 신청인이라고 함)의 채무전액의 변제로 이미 실효된 것이므로, 이를 기초로 한 피신청인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은 애초부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.
- 2. 또한, 일부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친구 사이로 서로

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고 피신청인의 주장채권은 소액이므로 피신청인 ( 청 청 인의 재산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민사 제 1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.

3. 따라서 이 사건 재산명시명령은 부당하여 신청인은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 영수증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(채무자) ◇◇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재산명시명령을 발한 법원	제출기간	재산명시명령을 송달 's operation of the second secon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63조
	• 재산명시명령취소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		
불복절차	집행법 제63조 제3항, 제4항, 제5항)		
및 기간	・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		
	제2항)		
비 용	·인지액 : 1,000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		
	·송달료 : 당자사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5회분		
기 타	・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		
	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		
	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		
	취소하여야 하고,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		
	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		
	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함(민사집행법 제63조 제2항, 제3항, 제4항).		
	·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		
	법원은 다음 절차, 즉 재산명시기일의 실시절차로 들어가게 되어		
	재산의 명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항고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게		
	된다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총칙